

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(제 20 조제 1 항 관련)

1. 시설종류별 사용료 계산의 방법 및 금액

가. 토지·건물 등의 사용료: 토지·건물·공작물 또는 기계·기구의 사용료는 「국유재산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나. 항행안전시설 사용료: 항공로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로서 항공기(국제 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)의 착륙 또는 통과비행 1 회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

1) 피스톤 항공기

가) 도착의 경우에는 11 만 6 천 210 원

나)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5 만 8 천 100 원

다)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2 만 9 천 50 원

2) 터보 항공기

가) 도착의 경우에는 17 만 4 천 310 원

나)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8 만 7 천 150 원

다)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4 만 3 천 580 원

3) 제트 항공기

가) 도착의 경우에는 23 만 2 천 410 원

나)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5 만 7 천 210 원

다) 항로가 아닌 곳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5 만 8 천 100 원

2. 사용료의 감면

가. 지방항공청장은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.

1) 기상악화, 천재·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(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로 공항을 이륙한 후 2 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

2)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(대한민국의 공항에 한정한다)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. 다만,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이 경우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.

3) 천재·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. 다만,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

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이 경우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.

4)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

5) 「항공안전법」 제 36 조제 3 항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

6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

가) 「항공안전법」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

나) 「항공사업법」 제 2 조제 10 호 및 제 12 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법 제 2 조제 14 호 및 제 16 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 134 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

다) 「고등교육법」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

7)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

나. 지방항공청장은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1) 전년도의 공항시설 이용실적이 공항의 여객처리능력(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)의 30 퍼센트 이하인 공항 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공항에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항공기: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 퍼센트

2)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여건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공기: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 퍼센트 이내

3. 사용료의 징수방법

가.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, 국제항공운송사업자,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(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를 포함한다)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각종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되, 납부 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. 다만,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나. 가목 외의 자가 일시적으로 운항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사용료는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부하고, 그 밖의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징수 하되, 납부 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. 다만, 토지·건물·공작물 및 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되, 사용료가 50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연 4 회 이내

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,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그 납부 잔액에 대하여는 연 8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다. 사용료 중 10 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.